

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.

담당	검토자	결재권자

추가약정서 (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용도)

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앞

년 월 일

본인 (인)

주소

본인은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함)과 약정한
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1조 (공통사항) 대출금 상환 등

- ① 본인은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, 회수금액 전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
- ② 전세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상환하지 않는 경우, 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, 본인은 은행에 대한 본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
- ③ 본인은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되거나, 고소·소송 등에 대한 취하나 패소 등으로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거나 본 대출금리에 연 3%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

제2조 전세피해 주택의 전세자금대출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(대상자 여 □ / 부 □)

- ① 제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, 본인은 본 버팀목전세자금 이외에 기존 전세피해 주택의 전세자금대출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, 전세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즉시 회수금액 전액으로 아래의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하고, 회수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 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합니다.

1. 대출금융기관 :

2. 대출계좌번호 :

3. 대출일자 :

4. 대출잔액 :

- ② 전세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위와 같은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, 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, 본인은 은행에 대한 본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

이 추가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,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

본인

(인)

